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0. . . (제 회)	

지 방 자 치 단 체 기 금 관 리 기 본 법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지방채 및 공사채의 인수 용도로 운용하기 위한 계획의 수립·변경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두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 등이 국가에서 지방으로 전환되면서 발생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장에게 납입되는 지방소비세를 지역상생발전기금 재원으로 명시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조합에 두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지역상생발전기금에 전환사업보전계정을 신설하며 그 재원을 정하는 한편,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가 지역상생발전기금에 출연하는 금액을 「지방세법 시행령」 제75조제1항제5호에 따라 산출한 해당 시·도 지방소비세액의 35퍼센트로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안 제12조의2 신설)

지방자치단체조합에 두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행정안전부에서 발전기금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시·도에서 발전기금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 4명 및 지방재정·지방세 등의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민간위원 5명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함.

나.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의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금 조정
(안 제12조의3제1항)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가 지역상생발전기금에 출연하는 금액을 지역별 소비지출 등을 고려하여 해당 시·도에 안분하는 지방소비세액의 9분의 5의 35퍼센트에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75조제1항제5호에 따라 산출한 해당 시·도 지방소비세액의 35퍼센트로 조정함.

다. 전환사업보전계정 신설 및 지역상생발전기금의 계정별 재원·용도 정비(안 제13조의2부터 제13조의4까지, 안 제13조의5 신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 등이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전환되면서 발생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방소비세액의 일부가 지역상생발전기금으로 납입됨에 따라 해당 용도로 운용되는 지역상생발전기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전환사업보전계정을 신설하는 한편,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재정지원계정, 융자관리계정 및 전환사업보전계정의 각 용도 및 재원을 조정함.

라. 지역상생발전기금 성과 분석 및 성과 분석 평가의 절차 등 규정

(안 제18조 및 제19조)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장은 지역상생발전기금에 대한 성과 분석 실시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1월 31일까지 통보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보받은 성과 분석 실시 계획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상생발전기금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 3월 31일까지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장에게 제출하며,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장은 6월 30일까지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성과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한편,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은 지역상생발전기금 성과 분석에 대한 평가를 10월 31일까지 수행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재정부·교육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0. 1. 17. ~ 2020. 2. 3.)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법 제17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른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말한다.

제12조의2를 제12조의3으로 하고, 같은 조(종전의 제12조의2)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경우에는”을 “경우”로, “금액을 다음 연도의 추가경정예산”을 “금액은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정산하고, 해당 금액을 다음다음 연도의 예산”으로, “6월 30일까지 정산하여야”를 “3월 31일까지 조합에 납입해야”로 하고,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법 제17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별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75조제1항제5호에 따라 산출한 해당 시·도의 안분액 × (35/100)
--

제12조의2(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행정안전부에서 발전기금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2. 시·도에서 발전기금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으로서 조합의 장이 위촉하는 사람 4명
3. 지방재정, 지방세 등의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성별을 고려하여 조합의 장이 위촉하는 사람 5명. 이 경우 2명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제3호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결정한다.

④ 조합의 장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합의 규약으로 정한다.

제13조의2제1항 중 “재정지원계정과 용자관리계정”을 “재정지원계정, 용자관리계정과 전환사업보전계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18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를 “법 제1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

까지”로, “조 제4호”를 “항 제4호 및 제6호”로, “재정지원계정”을 “재정지원계정으로 관리하며, 같은 항 제5호의 용도로 운용되는 발전기금은 전환사업보전계정”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18조제1항제5호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에서 지방으로 전환되는 사업”이란 별표의 사업을 말한다.

제13조의3제1호 중 “출연금”을 “출연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법 제17조의2제1항제6호”를 “법 제17조의2제1항제8호”로, “운용수익”을 “수입금”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융자관리계정”을 “융자관리계정 및 전환사업보전계정”으로 한다.

제13조의4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17조의2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액
2. 법 제17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출연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3. 법 제17조의2제1항제8호에 따른 수입금 중 융자관리계정의 수입금
4. 재정지원계정 및 전환사업보전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

제13조의5, 제18조 및 제19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5(전환사업보전계정의 재원) 전환사업보전계정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7조의2제1항제7호에 따른 금액
2. 법 제17조의2제1항제8호에 따른 수입금 중 전환사업보전계정의 수

입금

제18조(발전기금의 성과 분석) ① 조합의 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발전기금의 성과 분석을 위하여 전년도 발전기금에 대한 성과 분석 실시 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연도 1월 31일까지 통보해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 받은 성과 분석 실시 계획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전년도 발전기금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 3월 31일까지 조합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조합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출한 발전기금 성과보고서를 토대로 해당 연도 6월 30일까지 전년도 발전기금의 성과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발전기금 성과 분석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합의 규약으로 정한다.

제19조(전문기관 지정 기준 및 발전기금의 성과 분석에 대한 평가) ① 법 제2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행정, 재정, 경제, 세제 및 그 밖에 이와 관련된 분야(이하 “행정등 분야”라고 한다)를 전문적으로 조사·연구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일 것
2. 행정등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전문 연구인력을 15명 이상 확보하고 있을 것

3. 행정등 분야에 대하여 전문적인 조사·연구를 5년 이상 또는 30건 이상 수행한 실적이 있을 것

②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은 전년도 발전기금의 성과 분석에 대한 평가를 해당 연도 10월 31일까지 수행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연금의 산정 및 정산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3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0회계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발전기금의 계정 구분 및 계정별 재원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2부터 제13조의5까지의 개정 규정은 2020회계연도분부터 적용한다.

[별표]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전환되는 사업(제13조의2제3항 관련)

사 업	
1.	소하천 정비
2.	농어업기반 정비
3.	농어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
4.	거점지역기반시설 지원
5.	화물자동차공영차고지 건설 지원
6.	물류단지 진입도로 조성
7.	산학연 유치지원센터 지원
8.	지방하천 정비
9.	산림경영자원 육성
10.	관광지 개발조성
11.	문화관광자원개발 조성
12.	생태녹색관광자원개발
13.	전통한옥체험숙박시설 지원(시설 개·보수 사업으로 한정한다)
14.	관광안내체계 구축(관광진흥개발기금에서 지원하는 관광안내체계 구축 지원 사업은 제외한다)
15.	탐방로안내체계 구축
16.	청소년시설 확충
17.	지역특성화산업 육성 지원
18.	전통시장 및 중소유통물류기반 조성
19.	공립미술관 건립 지원
20.	역사·전통문화도시 조성
21.	문화특화지역 조성
22.	지역문화예술특성화 지원
23.	문예회관 건립 지원
24.	지방문화원 시설비 지원
25.	문화예술인 기념시설 조성
26.	지역 전통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
27.	문화·체육·관광시설의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에 대한 정부지급금
28.	복합문화시설 조성
29.	전통사찰 보수정비(세종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로 한정한다)
30.	제주 태고문화센터 건립
31.	대구디자인패션산업 육성 지원
32.	지역문화산업연구센터(CRC) 지원

33. 광주공예문화산업 육성
34. 경기문화창조허브 설립 운영
35. 지역영상미디어센터 건립
36. 작은영화관 건립
37. 실내영상스튜디오 건립
38. 지역문화행사 지원
39. 지역대표공연예술제
40.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
41. 공설동물장묘시설 설치 지원
42. 반려동물지원센터 설치 지원
43. 반려동물놀이시설 조성
44. 마을만들기
45. 기초생활인프라 정비
46. 농촌다움 복원
47. 농촌현장포럼
48. 농촌형 공공임대주택
49. 농촌 재능나눔
50. 농어촌생활용수 개발
51.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52. 식수전용저수지 확충
53. 상수원보호구역 주민 지원(제주특별자치도로 한정한다)
54. 생태하천복원(수계기금으로 지원하는 수질개선사업은 제외한다)
55.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설치
56. 산업단지 완충녹지 조성
57. 비산먼지저감사업
58. 서식지 외 보전기관 설치(환경개선특별회계에서 지원하는 서식지 외 보전기관 지원 사업은 제외한다)
59. 지방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
60.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제주특별자치도로 한정한다)
61. 생태휴식공간 확대
62. 자치단체직업능력개발 지원(제주특별자치도로 한정한다)
63. 제주국제자유도시기반시설 지원
64.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우리동네살리기 사업은 제외한다)
65. 지역 해양관광자원시설 지원
66. 지역 마리나시설 조성
67. 조업 중 인양 쓰레기 수매
68. 어업활동 중 발생하는 해양쓰레기 선상 집하장 설치

69. 공유수면 방치선박 정리 지원
70. 내항여객선 운임보조(제주특별자치도로 한정한다)
71. 수산물 산지 가공시설 및 관련 냉동·냉장시설 지원(클러스터형 사업은 제외한다)
72. 지방자치단체 수산물 안전검사체계 구축
73. 낚시터 환경개선
74. 적조피해 예방 지원(가두리시설 현대화 지원을 말한다)
75. 문화유산 관광자원 개발
76. 지역활력화작목 기반 조성
77. 지역특화 우수품종 보급
78. 농촌어르신 복지생활 실천 시범
79. 농업활동 안전사고 예방 생활화
80. 농업인 가공사업장 시설장비 개선 지원
81. 농업인조직체 가공 플랜트 지원
82. 농업전문인력 양성(제주특별자치도로 한정한다)
83. 농가경영개선 지원(제주특별자치도로 한정한다)
84. 농업기계안전교육(제주특별자치도로 한정한다)
85.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조성
86. 숲길조성·관리
87. 산림레포츠시설 조성
88. 유아숲체험원 조성
89. 치유의 숲 조성
90. 지방자치단체 도시숲 조성
91. 지방정원 조성
92. 지방수목원 및 박물관 조성
93. 지역생태숲 조성
94. 산림교육센터 조성
95. 산림복지단지 조성
96. 수목장림 조성
97. 공동체 정원 조성
98. 임도시설 조성 및 관리(간선임도 조성은 제외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전문기관) ①법 제17조제3 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 문기관”이라 함은 「한국지방 재정공제회법」에 의한 한국지 방재정공제회를 말한다.	제12조(전문기관) ①법 제17조제6 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한국지방재정 공제회법」에 따른 한국지방재 정공제회를 말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2조의2(기금운용심의회의 구 성 및 운영) ① 법 제17조제3항 에 따른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 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행정안전부에서 발전기금 업 무를 담당하는 국장
	2. 시·도에서 발전기금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으로 서 조합의 장이 위촉하는 사 람 4명
	3. 지방재정, 지방세 등의 분야 에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성별을 고 려하여 조합의 장이 위촉하는 사람 5명. 이 경우 2명은 행정 안전부장관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제3호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결정한다.

④ 조합의 장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합의 규약으로 정한다.

제12조의2(출연금) ① 법 제17조

제12조의3(출연금) ① 법 제17조

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별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7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산출한 해당 시·도의 안분액 × (5/9) × (35/100)

② (생략)

③ 제2항에 따른 해당 연도 출연금의 총액이 해당 연도에 실제로 납입된 지방소비세액을 기준으로 제1항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과 다를 경우에는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음 연도의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 그 해 6월 30일까지 정산하여야 한다.

제13조의2(발전기금의 계정 구분과 용도) ① 발전기금은 재정지원계정과 융자관리계정으로 구분한다.

② 법 제18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용도로 운용되는 발전기금은 융자관리계정으로

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별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75조제1항제5호에 따라 산출한 해당 시·도의 안분액 × (35/100)

② (현행과 같음)

③ -----

----- 경우 -----
----- 금액은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정산하고, 해당 금액을 다음다음 연도의 예산-- 3월 31일까지 조합에 납입해야 --.

제13조의2(발전기금의 계정 구분과 용도) ①----- 재정지원계정, 융자관리계정과 전환사업보전계정-----
-----.

② 법 제1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관리하고, 같은 조 제4호의 용
도로 운용되는 발전기금은 재정
지원계정으로 관리한다.

<신 설>

제13조의3(재정지원계정의 재원)
재정지원계정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7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출연금
2. 법 제17조의2제1항제6호에
따른 운용수익 중 재정지원계
정의 운용수익
3. 융자관리계정으로부터의 전
입금

제13조의4(융자관리계정의 재원)
융자관리계정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7조의2제1항제1호, 제2
호, 제4호, 제5호 및 제7호에

----- 항 제4호 및 제6
호----- 재정
지원계정으로 관리하며, 같은
항 제5호의 용도로 운용되는 발
전기금은 전환사업보전계정--.

③ 법 제18조제1항제5호에서 말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
가에서 지방으로 전환되는 사
업”이란 별표의 사업을 말한다.

제13조의3(재정지원계정의 재원)

-----.

1. -----
-- 출연금의 2분의 1에 해당
하는 금액
2. 법 제17조의2제1항제8호---
-- 수입금 -----
-- 수입금
3. 융자관리계정 및 전환사업보
전계정-----
--

제13조의4(융자관리계정의 재원)

-----.

1. 법 제17조의2제1항제1호, 제2
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u>다른 재원</u> 2. <u>법 제17조의2제1항제6호에 따른 운용수익 중 용자관리계정의 운용수익</u> <u><신 설></u> <u><신 설></u> <u><신 설></u> <u><신 설></u>	<u>규정에 따른 금액</u> 2. <u>법 제17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출연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u> 3. <u>법 제17조의2제1항제8호에 따른 수입금 중 용자관리계정의 수입금</u> 4. <u>재정지원계정 및 전환사업보전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u> <u>제13조의5(전환사업보전계정의 재원) 전환사업보전계정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u> 1. <u>법 제17조의2제1항제7호에 따른 금액</u> 2. <u>법 제17조의2제1항제8호에 따른 수입금 중 전환사업보전계정의 수입금</u> <u>제18조(발전기금의 성과 분석) ①</u> <u>조합의 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발전기금의 성과 분석을 위하여 전년도 발전기금에 대한 성과 분석 실시 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연도 1월 31일까지 통보해야 한다.</u> <u>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u>
---	---

<신 설>

에 따라 통보 받은 성과 분석 실시 계획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전년도 발전기금 성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3월 31일까지 조합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조합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출한 발전기금 성과보고서를 토대로 해당 연도 6월 30일까지 전년도 발전기금의 성과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발전기금 성과 분석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합의 규약으로 정한다.

제19조(전문기관 지정 기준 및 발전기금의 성과 분석에 대한 평가) ① 법 제2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행정, 재정, 경제, 세제 및 그 밖에 이와 관련된 분야(이하

“행정등 분야”라고 한다)를 전문적으로 조사·연구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일 것

2. 행정등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전문 연구인력을 15명 이상 확보하고 있을 것

3. 행정등 분야에 대하여 전문적인 조사·연구를 5년 이상 또는 30건 이상 수행한 실적이 있을 것

②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은 전년도 발전기금의 성과 분석에 대한 평가를 해당 연도 10월 31일까지 수행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	
연 락 처	(044) 205 - 3704